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 |
|------------|------|
| 의 안 번 호 | 2378 |
|------------|------|

2025. 2. 24.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5. 2. 3. 이종태 의원 발의 (2025. 2. 6. 회부)

2. 제안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3조제5항 중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을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1만3천제곱미터”를 “각각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단의 가로구역 내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¹⁾으로, 가로구역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시·도조례로 완화²⁾할 수 있었던 반면에, 가로구역 내에 포함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두 구역 간의 면적이 달라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가로주택정비사업 잔여부지 발생 사례]

| [사례1] 중랑구 신내동 493-13 일대 | [사례2]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
|--|---|
| ○ 면적현황: (가로구역) 10,540㎡ (사업시행구역) 9,012㎡ (△1,528㎡) | ○ 면적현황: (가로구역) 11,739㎡ (사업시행구역) 9,970㎡ (△1,769㎡) |
|  |  |

-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중 략)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 이에,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의 일환³⁾으로 사업시행 구역의 면적을 가로구역과 같이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시·도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⁴⁾하였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규법비교]

| 개정 전 [시행 2024. 3. 19.] | 개정 후 [시행 2024. 11. 5.] |
|--|---|
| <p>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p>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p> <p>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후 략)</p> | <p>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① ----- ----- ----- -----.</p> <p>2. ----- ----- -----</p> <p>가. ----- ----- .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u>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u>, -----, (후 략)</p> |

○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최대 면적을 가로구역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으로,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

3) ‘1.10, 3.19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2024.6.13.)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개정연월일: 2024. 11. 5. 일부개정·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시행구역의 경계를 정형화하는 등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사업시행구역의 상한 면적의 표기와 관련하여 일부 지구 수정이 필요할 것임.

| 현 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 ④ (생략) ⑤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 3천제곱미터로 한다. ⑥·⑦ (생략)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과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 <u>따른</u> — 각각 1만3천제곱미터—. ⑥·⑦ (현행과 같음)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각각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 ⑥·⑦ (개정안과 같음) |

| | | |
|-----------|-----|--------------|
| 의안심사지원팀장 | 강대만 | 02-2180-8204 |
| 입 법 조 사 관 | 신아현 | 02-2180-8216 |

[붙임1] 관계법령(p.5)

[붙임2]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 비교(p.5)

[붙임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면적 현황 (p.10)

[붙임3]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확대 가능지(2개소) (p.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1. 12. 16., 2022. 8. 2., 2023. 7. 7., 2023. 10. 18., 2023. 11. 28., 2024. 3. 19., 2024. 11. 5.>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裸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 2)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4) 그 밖에 지형여건·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
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3)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 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 10. 22., 2020. 3. 17., 2021. 9. 17., 2022. 1. 18., 2023. 11. 28., 2024. 3. 19.>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 4만제곱미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③ 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3. 10. 18.>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④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22. 1. 18., 2023. 10. 18.>

붙임2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 비교

| 구분 | 가로구역 | | 사업시행구역 | |
|----|-------|---|--------|---|
| | 기준 | 내용 | 기준 | 내용 |
| 원칙 | 1만㎡ | - | 1만㎡ | - |
| 예외 | 1.3만㎡ | <p>조례로 완화가능</p> <p>* 시행령: 2019. 10. 22. 개정 ** 조례: 2020. 7. 16. 개정</p> | 1.3만㎡ | <p>조례로 완화가능</p> <p>* 시행령: 2024. 11. 5. 개정 ** 이번 개정조례안 신설 예정</p> |
| | 2만㎡ | <p>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득</p> <p>* 내용: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p> | 2만 | <p>모아타운인 경우 또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p> <p>1. 시장 또는 지방공사가 공동 또는 단독 시행 2.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10%이상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또는 주택 전체 세대 수 대비)</p> |
| | 4만㎡ | <p>모아타운인 경우</p> <p>[참고] 모아타운 수립대상 지역은 10만㎡미만으로 할 수 있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8조의2).</p> | 4만㎡ | <p>모아타운이면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p> <p>1. 시장 또는 지방공사가 공동 또는 단독 시행 2.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10%이상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또는 주택 전체 세대 수 대비)</p> |

붙임3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면적 현황

□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88개소

| 구간 | 사업시행구역 면적 | 계 | 추진단계 | |
|------------|-------------------------------|-----------|-----------|----------|
| | | | 조합인가완료 | 건축심의완료 |
| | 총계 | 88 | 51 | 37 |
| 1구간 | 2,500㎡ 미만 | 19 | 10 | 9 |
| 2구간 | 2,500㎡ 이상 ~ 5,000㎡ 미만 | 22 | 10 | 12 |
| 3구간 | 5,000㎡ 이상 ~ 7,500㎡ 미만 | 43 | 30 | 13 |
| 4구간 | 7,500㎡ 이상 ~ 10,000㎡ 미만 | 15 | 12 | 3 |
| 5구간 | 10,000㎡ 이상 ~ 12,500㎡ 미만 | 0 | - | - |
| 6구간 | 12,500㎡ 이상 ~ 15,000㎡ 미만 | 0 | - | - |
| 7구간 | 15,000㎡ 이상 ~ 17,500㎡ 미만 | 0 | - | - |
| 8구간 | 17,500㎡ 이상 ~ 20,000㎡ 미만 | 0 | - | - |

□ 가로주택정비사업 상세 현황: (4구간)15개소

(단위: ㎡)

| 연번 | 자치구 | 대상지 | 가로구역 | 사업시행구역 | 비고 |
|-----------|------------|-------------------------|---------------|--------------|--------------|
| 1 | 강서구 | 화곡동 1130-7 일대 | 9,123 | 8,943 | |
| 2 | 성북구 | 하월곡동40-107번지 일대 | 8,433 | 8,433 | |
| 3 | 성북구 | 장위동 219-133 일대 | 9,786 | 9,786 | |
| 4 | 성북구 | 장위동 232-41 일대 | 7,976 | 7,976 | |
| 5 | 성북구 | 장위동 219-114번지 일대 | 8,367 | 8,367 | |
| 6 | 성북구 | 장위동 258-2 일대 | 9,760 | 9,760 | |
| 7 | 송파구 | 가락동 55 | 7,550 | 7,550 | |
| 8 | 종량구 | 면목본동 127-26번지 일대 | 7,699 | 7,699 | |
| 9 | 종량구 | 망우본동 509-1번지 일대 | 7,565 | 7,565 | |
| 10 | 종량구 |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 10,540 | 9,012 | 사업시행구역 확대가능지 |
| 11 | 강동구 | 성내동 288-1번지 일대 | 9,682 | 9,682 | |
| 12 | 강동구 | 암사동 495번지 일대 | 9,881 | 9,586 | |
| 13 | 강동구 | 천호동 145-66 일대 | 11,739 | 9,970 | 사업시행구역 확대가능지 |
| 14 | 강북구 | 미아동 767-51번지 일원 | 9,438 | 9,489 | |
| 15 | 양천구 | 목3동 657-1번지 외 18필지 | 9,938 | 9,578 | |

붙임4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확대 가능지(2개소)

□ 중랑구 신내1동 493-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추진현황 : 조합설립인가
- 가로구역 면적 : 10,540㎡ / • 사업시행구역 면적 : 9,012㎡
- 기존세대수 : 130호 / • 공급세대수 : 211세대



□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추진현황 : 조합설립인가
- 가로구역 면적 : 11,739㎡ / • 사업시행구역 면적 : 9,970㎡
- 기존세대수 : 63호 / • 공급세대수 : 252세대

